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6-3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26

발의연월일: 2026. 10. 12.
발 의 자 : 최상규 의원

1. 개정이유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를 신설(안 제2조)

나.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조문 신설에 따른 기존 조문 이동(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02-450-2843, 팩스: 02-454-0438,

전자메일: ksyoung35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제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 지원)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지원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제2조

2.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①(생 략)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기획경제국 청년정책과 문선영(02-450-7046)

붙임1	개정사항 반영 전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
3. 재정지원과 홍보
4. 구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 · 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6. 자격시험(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료 지원

7.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 · 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 ·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 ·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관계법령

법규명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규명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생략)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 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